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189~189p 하단 번호 : 14	해설	③ $30 + 3 + 5 + 10 = 48$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(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)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(수정신고 등)으로 3억 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.	③ $30 + 2 + 5 + 10 = 47$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(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)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. 다만,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(수정신고 등)으로 2억 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.
189~189p 하단 번호 : 14	정답	14 ③	14 정답없음(※ 출제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의 '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'이 3억 원이므로 ③이 정답이었으나, 2021. 2. 17 법령 일부개정되면서 2억원으로 변경되어 정답이 없다.)
303~303p 하단 번호 : 28	해설	$₩30,000(\text{현금 및 현금성자산}) = ₩3,000(\text{우편환}) + ₩400(\text{당좌예금}) + ₩1,000(\text{선일자수표}) + ₩500(\text{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}) + \\$?(\text{외국환통화}) + ₩7,500(\text{배당금지급통지표}) + ₩500(\text{양도성 예금증서})$ 외국환통화에 해당하는 금액(₩) = $₩30,000 - ₩12,900 = ₩17,100$ 결과적으로 (주)관세의 외국환통화는 $₩17,100 / ₩1,100 = \\$15.54 \approx \\16이다.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·현금에 해당하는 것 : 우편환(통화대용증권), 당좌예금(요구불예금), 선일자수표(통화대용증권),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(통화대용증권), 외국환통화(통화), 배당금지급통지표(통화대용증권) ·현금성자산 : 양도성 예금증서	$₩30,000(\text{현금 및 현금성자산}) = ₩3,000(\text{우편환}) + ₩400(\text{당좌예금}) + ₩500(\text{지점전도금}) + ₩500(\text{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}) + \\$?(\text{외국환통화}) + ₩7,500(\text{배당금지급통지표}) + ₩500(\text{양도성 예금증서})$ 외국환통화에 해당하는 금액(₩) = $₩30,000 - ₩12,400 = ₩17,600$ 결과적으로 (주)관세의 외국환통화는 $₩17,600 / ₩1,100 = \\$16$이다.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성자산 ·현금에 해당하는 것 : 우편환(통화대용증권), 당좌예금(요구불예금), 만기가 도래한 국채 이자표(통화대용증권), 외국환통화(통화), 배당금지급통지표(통화대용증권) ·현금성자산 : 양도성 예금증서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